

# 예 산 총 칙

제 1 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8,436,208,429	253,086,253
일	반 회 계	7,440,808,664	223,224,260
특	별 회 계	995,399,765	29,861,993
	기 타 특 별 회 계	995,399,765	29,861,993
	농 어 촌 주 택 사 업	3,960,000	118,800
	의 료 급 여 기 금	595,154,564	17,854,637
	동 부 권	36,655,749	1,099,672
	학 교 용 지 부 담 금	15,964,929	478,948
	소 방	342,939,726	10,288,192
	특정자원분 지역 자원 시설 세	724,797	21,74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 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,042,302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193,400,000천원”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